#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58 발의연월일: 2025. 3. 14.

발 의 자: 민형배·정동영·문정복

김문수 • 양부남 • 안도걸

이개호 • 박지원 • 소병훈

김현정 · 민병덕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훈 취소 사유 중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 형법상 반란·이적죄 등으로 특정해 불명확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서훈 취소 사유를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경우로 합니다.

서훈 취소 요건 중 '국가안전에 관한 죄' 부분은 불명확한 개념이기 때문에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형의 선고를 받고 확정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서훈 취소 사유 중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형법」상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에 따른 반란의 죄·이적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정한 죄 등으로 특정하려 합니다.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서훈 수여와 그 취소 절차의 엄중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8조제1 항제2호). 법률 제 호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 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제2장 외환의 죄
  - 나.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제2장 이적의 죄
  - 다. 「군사기밀 보호법」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에 규정된 죄(제1 0조제1항, 제14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① 훈장 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①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 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 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거 경우 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가. 「형법」 제2편제1장 내 란의 죄·제2장 외환의 죄 나.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제2장 이적의 죄 다. 「군사기밀 보호법」 제1 0조부터 제18조까지에 규 정된 죄(제10조제1항, 제1 4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